

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4월 17일) 상정
의결

2.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

□ 대안의 제안 경위

-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시민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포상대상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시외 거주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에게 국한된 포상권한을 구청장·동장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개정하려는 것이나
- 포상권자를 구청장까지만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상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시 소속직원과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한정된 포상대상을 시정발전,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)

나. 지금까지 각종 포상은 시장만이 하였으나, 앞으로는 구청장 까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.(안 제3조)

다. 포상권자 확대로 포상절차를 변경함.(안 제9조)

부천시 조례 제 호

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(공무원을 포함한다)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

제3조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①항중 “실과소장 및 구청장은” 삭제하고 “시장에게”는 “포상권 자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과 시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</p> <p>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<u>시장</u>이 행한다.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구청장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. 다만,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(공무원을 포함한다)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</p> <p>제3조(포상권자) ----- <u>시장 또는 구청장</u> -----.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. 다만,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
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제511호
의결 년월일	2006. 4. 19. (제126회)

제안년월일 : 2006. 4. 17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(정윤중의원 외 9인)

□ 대안의 제안 경위

-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시민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포상대상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시외 거주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에게 국한된 포상권한을 구청장·동장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개정하려는 것이나
- 포상권자를 구청장까지만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상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대안의 주요골자

가. 시 소속직원과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한정된 포상대상을 시정발전,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2조)

나. 지금까지 각종 포상은 시장만이 하였으나, 앞으로는 구청장 까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.(안 제3조)

다. 포상권자 확대로 포상절차를 변경함.(안 제9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(공무원을 포함한다)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

제3조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①항중 “실과소장 및 구청장은” 삭제하고 “시장에게”는 “포상권자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과 시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(공무원을 포함한다)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</p>
<p>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<u>시장</u>이 행한다.</p>	<p>제3조(포상권자) ----- <u>시장 또는 구청장</u> -----.</p>
<p>제9조(포상절차)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구청장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. 다만,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제9조(포상절차)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. 다만,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